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3월 6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2024 - 24

나. 발의자: 전철규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4년 2월 20일

라. 상정일자: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4. 3. 6.)

2. 제안이유

현재 제1차 정례회에서 행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존 5월 25일로 정하고 있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6월 1일로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삭제함(안 제4조 제1호)

나. 기존 11월 22일로 정하고 있던 제2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11월 15일로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제2호)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3조

5.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정해진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것을 개정의 주요내용으로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현행 5월 25일인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6월 1일로 변경하고, 현행 11월 22일로 정하고 있던 제2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11월 15일로 변경하며, 행정사무감사의 시행을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함.

다. 비용추계

- 예산 수반 사항 없음

- 기존 예정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추가 예산의 편성의 필요는 없음

라.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3조에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과 정례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례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에 위배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조사한 결과 제1차 정례회에서는 11개 자치구, 제2차 정례회에서는 13개 자치구, 기타 1개 자치구로 조사되었음.

(※붙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정례회 시기 및 행정사무감사 시기 참조)

-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정례회의 시기는 「지방자치법」 상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제1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 수행이라는 방향을 정하는 개정임
- 덧붙여, 행정사무감사의 시기가 제2차 정례회로 옮겨진다는 전제하에서 정례회 개최 시기를 조정한 개정안 또한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필요하고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됨.

마. 추가의견

-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가 제2차 정례회 수행으로 정해진다면,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그 기간을 2023년 1월부터 12월, 2024년 1월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 직전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조례 개정으로 인한 과도기적 상황이 예상됨.

(※ 예상 행정사무감사 해당 사무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월 1일 ~ 2024년 10월)

- 이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정관리와 계획 수립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회 정례회 시기 및
행정사무감사 시기(2024.2.22.기준)**

연번	자치구명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1	강남구	6월10일	11월15일	2차
2	강동구	6월 첫 번째 수요일	11월 세 번째 수요일	2차
3	강북구	6월1일	11월 17일	2차
4	강서구	5월25일	11월22일	1차
5	관악구	6월8일	11월20일	2차
6	광진구	5월 네 번째 화요일	11월16일	2차
7	구로구	5월 네 번째 화요일	11월27일	1차
8	금천구	6월8일	11월23일	1차
9	노원구	6월1일	11월18일	2차
10	도봉구	6월8일	11월17일	2차
11	동대문구	5월26일	11월27일	1차
12	동작구	6월10일	11월13일	2차
13	마포구	6월1일	11월25일	1차
14	서대문구	6월 첫 번째 목요일	11월11일	2차
15	서초구	6월1일	11월15일	2차
16	성동구	6월5일	11월25일	1차
17	성북구	6월2일	11월20일	1차
18	송파구	6월 두 번째 수요일	11월19일	2차
19	양천구	5월25일	11월29일	1차
20	영등포구	6월12일	11월20일	2차
21	용산구	6월1일	11월20일	2차
22	은평구	5월 네 번째 화요일	11월 네 번째 화요일	1차
23	종로구	5월20일	11월20일	1차
24	중구	6월12일	11월21일	1차 또는 2차
25	중랑구	5월25일	11월28일	1차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